

## ETC 시스템 이용 규정

### 제 1 조 (목적)

본 이용 규정은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,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,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,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, 한신 고속도로 주식회사, 혼슈시코쿠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공사 등 (유료도로 자동요금수납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금징수사무 취급 관련 법령 (1999년 건설성령 (建設省令) 제 38 호)(이하 '성령')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한 지방도로공사 또는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이나 시정촌 (市町村) 인 도로 관리자를 뜻하며 이하 같음) 이 성령 제 2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.

### 제 2 조 (준수사항)

무선 통신으로 통행 요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수속을 자동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(이하 'ETC 시스템') 을 이용하려는 자는 본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.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ETC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행 요금을 청구하는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,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,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, 한신 고속도로 주식회사, 혼슈시코쿠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공사 등 (이하 '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') 은 ETC 시스템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.

### 제 3 조 (이용에 필요한 절차)

ETC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 (1) 호에 언급된 절차를 완료한 후 제 (2) 호부터 제 (4)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.

(1)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 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ETC 카드 (차량 장착 무선 장치 (자동차 (도로 운송 차량법 (1951년 법령 제 185호) 제 2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뜻하며 이하 같음) 에 설치하여 도로측 안테나와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교신하는 무전기를 뜻하며 이하 같음) 에 삽입하여 무선 장치를 작동하고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카드를 뜻하며 이하 같음) 를 발행하는 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ETC 카드를 대여받을 것 .

(2)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무선 장치 제조업체에서 적합하다고 규정한 무선 장치를 구입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할 것 .

(3) 전 호에서 취득한 무선 장치를 무선 장치 제조업체가 규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에 설치할 것 .

(4) 성령 제 4 조 제 1 항 제 (3) 호에 규정된 일반 재단법인이 정한 방법으로 제 (2) 호에서 취득한 무선 장치를 통행 요금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것 (이하 '설정') . 단, 이륜차 (도로운송차량법 제 3 조의 소형 자동차 또는 경차인 이륜자동차 (사이드 카가 달린 이륜 자동차 (걸터앉는 좌석, 핸들바 방식의 조향 장치, 바퀴 3 개에 운전자석 옆에 개방된 자동차이며 삼륜 캐노피형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) 를 포함) 를 뜻하며 이하

같은 ) 으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설정 전에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의 별도 규정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에게 등록할 것 .

#### 제 4 조 ( 무선 장치 취급 )

무선 장치의 분해, 개조 등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.

2. 무선 장치 안테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 전파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.
3. 무선 장치를 취득한 자는 무선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번호판 ( 자동차 등록 번호표 및 차량 번호표 ) 이 변경된 경우, 무선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한 경우, 또는 무선 장치를 다른 자동차에 설치한 경우 등 설정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.

#### 제 5 조 ( ETC 카드 취급 )

ETC 카드의 분해, 개조 등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.

2. ETC 카드를 대여받은 자는 ETC 카드를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잃어버린 경우, 또는 대여한 ETC 카드가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 즉시 이를 ETC 카드 발급자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.
3. 유효 기간이 경과된 ETC 카드 및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 또는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ETC 카드 발급자가 무효화시킨 ETC 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.

#### 제 6 조 ( 이용 방법 )

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카드를 무선 장치에 정확히 끼워, ETC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, ETC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선 ( 이하 'ETC 차선' ) 으로 통행하십시오 .

#### 제 7 조 ( ETC 시스템 이용 제한 등 )

ETC 시스템 취급 도로관리자는 도로 관리상 필요한 경우 예고 없이 ETC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.

#### 제 8 조 ( 통행상 주의 사항 )

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차선 ( 스마트 IC(지방 공공 단체가 고속 자동차 국도법(1957년 법률 제 79 호) 제 11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 허가를 받은 동법 제 11 조 제 (1) 호의 시설 또는 도로법(1952년 법령 제 180 호) 제 48 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 허가를 받은 같은 법 제 48 조의 4 제 1 호 시설에서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(1956년 건설성령 제 18 호) 제 13 조 제 2 항 제 (3) 호 본문에 규정된 ETC 전용 시설만 설치되며, 동호 (가) 항목에 규정된 ETC 통행 차량만 통행 가능한 인터체인지를 뜻하며 이하 같음 ) 의 차선 및 일단정지해야 하는 ETC 차선 (ETC 차선 시스템 이용규정 실시세칙 제 5 조 기타 사항에 규정된 톨게이트에 있으며 이하 같음 ) 제외 ) 을 통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.

(1) **차선 표지판** (톨게이트 차선상에 설치된 ETC 시스템의 이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안내판을 뜻하며 이하 같음)에 **‘ETC’ 또는 ‘ETC 전용’**(이 표시의 차선은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2 항 제 (3) 호 본문에 규정된 ETC 전용 시설에 해당하며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차만 통행 가능), **‘ETC/일반’**(이 표시의 차선은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2 항 제 (4) 호 본문에 규정된 ETC/일반 공통 유인 시설, 동항 제 (5) 호 본문에 규정된 ETC/일반 공통 기계식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차 및 통행 요금을 징수하는 톨게이트에서 일단 정차하여 통행 요금을 지불하는 차량 (도로운송차량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도로 운송 차량 중 경차를 제외한 차량을 뜻하며 이하 같음)은 통행할 수 있음) 또는 **‘ETC/지원’**(이 표시의 차선은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2 항 제 (3) 호 본문에 규정된 ETC 전용 시설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음. 단, 통행 요금을 청구 또는 통행 요금 확정에 필요한 확인을 받는 톨게이트에서 일단 정차하여 통행 요금을 지불하는 차량 또는 직원에게 신청해야 하는 차량 중 ETC 차선상에 있는 개폐식 크로스 바 (이하 ‘개폐봉’)가 열리고 닫히는 지에 관계없이 개폐봉 앞에서 정차하여 직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행할 수 있음) 이 표시되니 이 표시에 따라 ETC 차선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진입할 것 .

(2) ETC 차선 내에서는 서행할 것 .

(3) 앞차가 갑자기 정차할 경우가 있으니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할 것 . 특히 ‘ETC/ 일반’ 또는 ‘ETC/ 지원’ 표시의 차선에서는 앞차가 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단 정차하니 주의할 것 .

(4) 전광 표지판 ( 차선 옆에 설치된 장치이며 통행 여부 외에 차종 구분, 통행 요금 금액 등을 표시하며, 이하 같음 ) 에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‘↑’,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‘STOP 정차’ 가 표시되니 이 표시를 확인할 것 .

(5) 전광 표지판에 ‘STOP 정차’ 가 표시된 경우 개폐봉이 열리지 않거나 닫히므로 개폐봉 바로 앞에서 정차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. 이 경우 함부로 차 밖으로 나가거나 전진 또는 후퇴하지 말 것 .

(6) 전광 표지판에 ‘↑’ 가 표시된 경우 ETC 차선의 개폐봉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폐봉과 기타 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행할 것 .

(7)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거나 추월하지 말 것 .

2.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스마트 IC 차선 (톨게이트 외 장소에서 ‘ETC’ 표시가 있는 ETC 통신 설비가 설치된 차선 제외) 및 일단 정지해야 하는 ETC 차선을 통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

(1) 해당 차선 주변에 설치된 안내판 등에 따라 천천히 진입하여 지정된 정지 위치 (이하 ‘정지 위치’)에 반드시 정지할 것 . 아울러 정지 위치에서 통신 개시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의 지시에 따를 것 .

(2) 다른 자동차와 나란히 주행하거나 추월하지 말 것 .

(3) 개폐봉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폐봉과 기타 설비에 충돌하지 않도록

주의하면서 서행할 것 .

(4) 개폐봉이 열리지 않을 경우 개폐봉 바로 앞에서 정차하여 직원에게 도움을 구할 것 .

3. 이륜차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ETC 차선을 통행하는 경우 전 2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.

(1) 안내판이나 도로 표시 등에 따라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ETC 차선인지 확인하고 진입할 것 .

(2) 안내판이나 전광 표시판 등에 통행 방법이 표시된 경우 그 표시에 따라 통행할 것 .

(3) 너무 느리게 주행하지 말고, 또 구불구불 주행하지 말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1 대씩 똑바로 진입할 것 .

4. 이륜차 ( 이 항에서만 사이드 카가 달린 이륜 자동차 제외 ) 로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차선 표지판에 ‘ETC’ 혹은 ‘ETC 전용’ 표시가 있는 차선을 통행하는 경우 개폐봉이 열리지 않거나 닫혀 있을 시 제 1 항 제 (5) 호 규정에 관계없이 후퇴하지 말고 개폐봉과 뒤 차량 등을 살펴 안전한지 확인한 후 개폐봉을 피해 ETC 차선에서 벗어나십시오 . 이 경우, 주정차가 가능한 곳에서 안전한지 확인한 후 바로 해당 ETC 차선을 관리하는 ETC 취급 도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.

5. 직원이 차선을 횡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통행하십시오 .

6. ETC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은 톨게이트 외 장소에서 ‘ETC’ 표시가 있는 ETC 통신 설비가 설치된 곳 주변을 통행하는 경우 표지판 및 기타 표시에 따라 주십시오 . 이 경우 동일 차선 내에서 나란히 주행하거나 추월하거나 갓길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.

### **제 9 조 ( 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통행 방법 )**

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자는 차선 표지판에 ‘ETC’ 또는 ‘ETC 전용’ 표시가 있는 ETC 차선, 스마트 IC 차선, 일단 정지해야 하는 ETC 차선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. 실수로 이 차선에 진입한 경우 개폐봉 바로 앞에서 정차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. 이 경우 함부로 차 밖으로 나가거나 전진 또는 후퇴하지 마십시오 .

### **제 10 조 ( 통행 요금 계산 )**

ET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의 기록 장치에 기록된 통행 거리에 따라 통행 요금이 계산됩니다 .

### **제 11 조 ( 면책 )**

ETC 시스템 취급 도로 관리자는 ETC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ETC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 본 이용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.

### **제 12 조 ( 별도 규정 )**

이용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,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등 이외 ETC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본 이용 규정의 사항 외에 별도로 규정됩니다 .

#### **부칙**

1. 본 이용 규정은 2023년 3 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.
  2. 1992년 3 월 1 일부 ETC 시스템 이용 규정 ( 이하 ‘구 이용 규정’ )은 본 규정의 적용으로 폐지됩니다 .
- 아울러 본 이용 규정 적용 전에 구 이용 규정에 따른 절차 중 본 이용 규정 적용에도 효력이 있는 것은 본 규정을 따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.